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검 토 보 고 서



2023. 7.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3. 7. 24.

운영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제출일자: 2023. 7. 7.
- 회부일자: 2023. 7. 7.
- 검토기간: 2022. 7. 10. ~ 7. 12.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 요인

-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반영
- 법정 필수경비(인건비 등) 부족분 반영

4. 추경예산안 내역[의회사무국 소관]

가. 세입예산: 해당 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의회사무국	4,354,789	4,065,029	289,760	7.1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1,771,614	1,757,514	14,100	0.8
합리적인 인사행정	8,682	8,682	0	0
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	352,316	351,116	1,200	0.3
인력운영비 (의회사무국)	2,121,167	1,847,447	273,720	14.8
기본경비 (의회사무국)	101,010	100,270	740	0.7

주요 편성 내역

- 대회의실 LED 전자현수막 구입 11,500천원 신규 편성
-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 부족분 70,962천원 증액 편성
-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에 따른 기본급 188,638천원 증액 편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 14,120천원 증액 편성

5.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3억 5,47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1% 증가한 2억 8,976만원을 증액 편성함.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회의실 LED 전자현수막 구입비 1,150만원 신규 편성,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 부족분 7,096만 2천원 증액, 정책지원관 기본급 1억 8,863만 8천원 증액,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41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대회의실 LED 전자현수막은 일회성 현수막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회의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당초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현원 기준에 맞게 반영하고, 지난 5월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기본급과 지난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등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